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나785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나7859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0가단511899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인한, 최우석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윤기창, 이완수, 박화정, 이진선, 김경수, 진동열, 박병훈, 장선, 이성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정민, 김민정

변론 종결2022. 6. 21.

판결 선고2022. 7. 19.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0가단5118998 판결

주문

1. 피고의 소송수계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26. 체결된 매매계약은 184,548,661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84,548,6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보전채권액 164,115,27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하였다가 당심에서 피보전채권액을 184,548,661원으로 확장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하였다).1)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은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D")에 대하여 2014. 9. 11.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7. 7. 아래 판결을 선고받아 2017. 11. 8. 확정되었다.2)

【D는 E에게 124,614,675원 및 그 중 113,114,675원에 대하여는 2013. 8. 1.부터, 1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1.부터 각 2016. 7.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D는 2016. 2. 26. 피고(변경 전 상호 : H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6. 8.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I에게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E은 2017. 2. 7. 파산선고를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100330), 원고는 2018. 2. 13. E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위 판결채권을 양도받았다.

라. 피고는 2021.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2021회합10006)을 받았다가, 2021. 11. 3.자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근거】갑 제1, 4, 5호증

2. 본안전항변 판단(제척기간 경과 여부)

피고는, 원고가 E의 승계인으로서 2018. 4. 16. 기초사실 가항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고, 2018. 11. 16. D의 채무자인 J 주식회사에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고, 2018. 11. 19. D의 채무자인 K공제조합에 출자증권 압류명령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2018. 11.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2020. 4.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우선 사해행위가 있는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보전채권의 양도인인 E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양도 당시에 구체적으로 이 사건 처분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21868 해당이의 사건에서 2020. 4.경 창원시 성산구청의

사실조회 회신을 통하여 D가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의 존재를 안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9, 10호증),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3. 본안판단

가. D의 채무초과 여부 및 사해행위 성부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D의 적극재산은 약 2,700만 원 정도이고,3) K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반환채권을 포함하더라도 약 7,700만 원 정도이다(창원지방법원 2018카명11101 재산명시 사건에서 D가 제출한 내역).

K공제조합	50,291,131	압류상태	27,177,400
J(주)	45,000,000	회수가가능성 의문	
S(주)	37,929,000	채무자의 부도처리	
T(주)	46,780,287	압류상태	
U(V)	880,000	없음	
대한민국(T(주)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보전 위한 현금공탁금)	5,000,000		
S(주)	113,202,102	채무자의 부도처리	
퇴직연금운용자산	2,274,413	근로자퇴직금 적립	
I(주)	3,325,761	압류상태	
우체국	4,537,786	압류상태	
W콘도 회원권	22,177,400		
X리조트 회원권	10,600,000	채무자의 부도처리	
합계	341,997,880		27,177,400

반면 D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 외에 Y은행 및 I에 대하여 각 6억 원의 대출채무(피고가 이를 지급보증하였다), 4) L 주식회사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 208,353,485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0. 16. 선고 2015가단12811), 주식회사 M에 대한 매매대금채무 2,956,390원(부산지방법원 2013. 12. 30.자 2013가소209305), 이 사건 Z호에 관한 전세금반환채무 5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다(갑 제2호증).

결국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해의사 추정 및 피고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D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한 매매대금이 전혀 없는 점(AA호의 매매대금 218,172,727원을 근저당채무 채권최고액 2억 4,000만원, Z호의 매매대금 146,723,636원을 근저당채무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을 인수하여 지급에 갈음하였다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나머지 AB호, AC호의 매매대금 지급 흔적이 전혀 없다), ② 2016년 피고의 감사보고서(갑 제13호증) 상으로, D가 피고의 특수관계자로 기재되어 있고, 2015년 약 8억 3,600만 원, 2016년 약 9억 6,000만 원의 거래가 있었으며, 2016년 피고가 D에게 약 7억 6,000만 원의 자금대여하고,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12억 원의 지급보증을 하고, AD보증보험에 대한 보증금액 약 2억 2,400만 원의 거래이행보증을 한 점, ③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 P이 D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를 겸임하고, C, Q, R 등이 피고와 D의 이사, 감사를 역임한 점, ④ D와 피고의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고(창원시 성산구 AE), 종전 상호 "AF"를 공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악의임이 분명하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I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상회복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826,678,180원)는 원고의 채권액 184,548,661원(원고 청구액)을 훨씬 초과하므로, 피보전채권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명한다.

2019-02-13	1,710,000	124,614,675) 113,114,675원 + 11,500,000원	70,816,2936) 64,123,294원 = 113,114,675원에 대한 2013.8.1.부터 2016.7.7.까지 연 6%(19,915,600원), 그 다음날부터 2019.2.13.까지 연 15%(44,207,694원)6,692,999원 = 11,500,000원에 대한 2013.5.1.부터 2016.7.7.까지 연 6%(2,198,547원), 그 다음날부터 2019.2.13.까지 연 15%(4,494,452원)	124,614,675	69,106,293
2019-05-17	21,700,000	124,614,675	73,868,9637) 추가분 4,762,670원 = 124,614,675원에 대한 2019.2.14.부터 2019.5.17.까지 연 15%	124,614,675	52,168,963
2019-10-25	50,081,453	124,614,675	60,391,4888) 추가분 8,222,525원 = 124,614,675원에 대한 2019.5.18.부터 2019.10.25.까지 연 15%	124,614,675	10,310,035
2022-06-21		124,614,675	59,933,9889) 추가분 49,623,953원 = 124,614,675원에 대한 2019.10.26.부터 2022.6.21.까지 연 15%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184,548,661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184,548,6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상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므로, 피고의 소송수계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영훈

판사노태헌

판사김창현

별지

1)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것을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본다.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23598(본소), 2015가합21575(반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5378(본소), 2016나2055385(반소) 판결, 대법원 2017다242768(본소), 2017다242775(반소) 판결

3) J(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또한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희박하여 적극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4) D는 피고에 대하여 2016년 현재 약 7억 6,000만 원의 차용채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113,114,675원 + 11,500,000원

6) 64,123,294원 = 113,114,675원에 대한 2013.8.1.부터 2016.7.7.까지 연

6%(19,915,600원), 그 다음날부터 2019.2.13.까지 연 15%(44,207,694원)

6,692,999원 = 11,500,000원에 대한 2013.5.1.부터 2016.7.7.까지 연 6%(2,198,547원), 그 다음날부터 2019.2.13.까지 연 15%(4,494,452원)

7) 추가분 4,762,670원 = 124,614,675원에 대한 2019.2.14.부터 2019.5.17.까지 연 15%

8) 추가분 8,222,525원 = 124,614,675원에 대한 2019.5.18.부터 2019.10.25.까지 연 15%

9) 추가분 49,623,953원 = 124,614,675원에 대한 2019.10.26.부터 2022.6.21.까지 연 15%